ISSN: 2586-6028 © 2017-2020 KODISA & KSSA
Website: http://www.kjsas.or.kr
doi: http://dx.doi.org/10.13106/jsas.2021.Vol5.no1.17

# Research on Policy Measures to Activate Sports Welfare*

**Young Chul KIM**, Jun Su KIM*****

**Received: April 05, 2021 Revised: April 16, 2021 Accepted: April 17, 2021.**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and scope of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and to present a systematic model enhancing sport welfare of the socie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order to induce idea for welfare policy and conceptual sport welfare model, this study reviewed a literature discussing the functions and mechanism of sport in enhancing a sense of life quality and thus rebuilding welfare of community.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se. First, sports welfare ensures the rights of sports of all citizens and has the main purpose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creating environments against inequalit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for everyone to enjoy, and the range should be continued from the right to live, environments against inequality, to the improvement of life and happiness. Second, since the integrated perspective was first suggested, sports integration development will be researched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of the integrated model. Basic research of indicator development will need to be proceeded to execute and evaluate the integrated model. Third,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of sports welfare instructors is urgent. Namely, compared to sports-related budget and the enhancement of facilities, the poor environment of sports welfare instructors needs to be improved. Instead of only testing physical fitness and prescription, the business needs to be continued by connecting to the participants' continuous participation in sports. **Conclusions:** Whether sports welfare succeeds depends on the need for an active beneficiary, identification of demand, a beneficiary that can discover potential to join offline and online into one, the establishment of sports policies to promote competency development, and a direct progression is needed.

**Keywords:** Community Welfare, Life Sports Outdoor, Sport for All, Sport Program

**JEL Classification Code:** D6, H51, H53, L82

##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생활체육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 보면 사회적 측면은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개인적 측면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한다. 이러한 생활체육의 목적과 목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며, 삶의 질 제고를 통해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사회적, 국가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란 행정부와 민간영역에서 국민의 개인적인 삶의 건강과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삶는 국가를 뜻한다 (Shim & Kim, 2012). 복지는 의식주 해결 문제를 넘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주 5 일 수업제 (2012 년 시행)와 주 5 일 근무제 (2004 년 시행)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여가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복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복지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1.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port Convergence,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youngchul071@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kim2019@eulji.ac.kr

© Copyright: Korean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KODIS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제시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보편성과 선별성의 문제, 국민기본권 보장 문제, 공정성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2015 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여가' 분야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이는 종합적이고 명확하게 여가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여가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보장받는 여가복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Lee & Hwang, 2016). 여가는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으며 그 중에 생활체육 영역은 여가활동 측면과 예방의학 및 건강유지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얻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직결된다.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은 스포츠 현장에서 사회복지 수단보다도 체육정책의 독자적 영역에서 스포츠 복지에 접근하고 있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 바우처, 지도자 파견, 스포츠버스 운영,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복지 발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오늘날까지 스포츠복지와 관련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스포츠 복지정책 또한 산발적이며 비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소득 불균형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이 발생하였으며, 초저출산률 및 생활환경의 개선, 발달된 의료기술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고령화 사회 (전체인구 중 65 세 이상 7%)에서 2018 년 고령사회 (14%), 2026 년 초고령 사회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D 국가 중 자살률 1 위 (인구 10 만명 당 28.7 명)로, OECD 평균 (인구 10 만명 당 12.0 명)의 두 배가 넘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생활체육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그 예로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체육 활성화, 증가하는 1 인 가구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진방안, 사회적 및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hn (2016)은'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전망'에서 맞춤형 체육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스포츠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정책이 추진되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체육복지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스포츠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이면은 스포츠 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사회계층 간 불평등한 스포츠 참여 문제를 해소되지 못하였다. 즉,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수혜대상은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양적·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스포츠복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채 시혜적 차원에서 국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자들은 스포츠복지에 관해 다면적인 연구를 하였다. Jo, Yu and Kim (2012)은 지금까지 학생스포츠복지를 위한 '복지'의 개념분석에서 스포츠와 복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들도 스포츠복지 개념을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 (Jang, 2007; Lee, 2007; Kim, 2007; Sohn & Yoon, 2009)으로만 논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스포츠복지가 적극적 복지, 생존권적 복지, 소극적 복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Lee (1995)은 체육복지란, 사회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체육을 통해 사회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 개선하려는 노력이라 정의했다. Shim (2012)은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과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정부의 스포츠복지 정책은 국정기조인 문화(문화융성)과 복지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스포츠복지를 정책의 주요 논제로 삼기 위해 스포츠복지의 개념, 복지대상의 보편성과 선별성, 스포츠 참여 환경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스포츠복지 개념은 국민복지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복지 간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혼란은 정책영역과 방향을 확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Choi, 2016; Lim, & Kim, 2015).

스포츠복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 관점에서의 복지'와 '복지 관점에서의 스포츠'의 차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한계를 밝혀내고 정책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념을 정립하고 접근하는 범주에 따라 스포츠복지의 목적, 영역, 범위, 대상 등을 확인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스포츠복지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체육복지에 관한 연구 (Lee, 1995),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복지와 스포츠 서비스 관련 연구 등이 있었다. 2000 년대에는 Oh (2005), Lee (2007), Kim (2007), Jang (2007), Sohn and Yoon (2009)의 연구가 있었다. 2010 년대에는 Kim, Kim and Lee (2010), Lee, and Shim (2011), Kim (2011), Shim (2012), Shim and Kim (2012), Jo, Yu and Kim (2012), Hong, Eugene and Kim (2013), Lim and Kim (2015), Lee and Hwang (2016), Choi (2016) 등의 연구가 있었다. 1990 년대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스포츠 서비스 등과 연계를 시도하였고 2000 년대에는 '스포츠'와 '복지' 두 개념을 합하여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2010 년도 들어서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 목적과 목표 그리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복지의 목적, 대상, 영역, 범위를 설정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스포츠복지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수혜대상을 제시하고 스포츠복지 목적별로 분류하였다. 이는 향후 스포츠복지 관련 정책방안과 법률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까지 스포츠복지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스포츠복지 관련 선행 연구, 정기 간행물, 지자체 및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Choi, 2016; Jang, 2007; Kim, 2007, Kim, Kim & Lee, 2010; Lee, 1995; Lee, 2007; Lee & Hwang, 2016; Lee & Shim, 2011; Lim & Kim, 2015; Oh, 2005; Shim, 2012; Shim & Kim, 2012; Sohn & Yoon, 2009).

### 2.2. 연구모형 및 도식화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인 스포츠복지의 개념 정립을 하고 스포츠복지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단계별 개념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스포츠복지의 당위성을 조명하고 둘째, 관점에 따른 스포츠복지를 통해 범위에 따른 스포츠복지 개념을 설정하여 스포츠복지 대상 및 목적의 개념화하고 스포츠복지의 모형을 제시했다. 도식화 과정은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 경제적 가치추정과 정책방향, 맞춤형 문화복지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국민체육복지의 인식전환 <스포츠복지 인식분석에 따른 정책적 제안>,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정책방향 등 선행연구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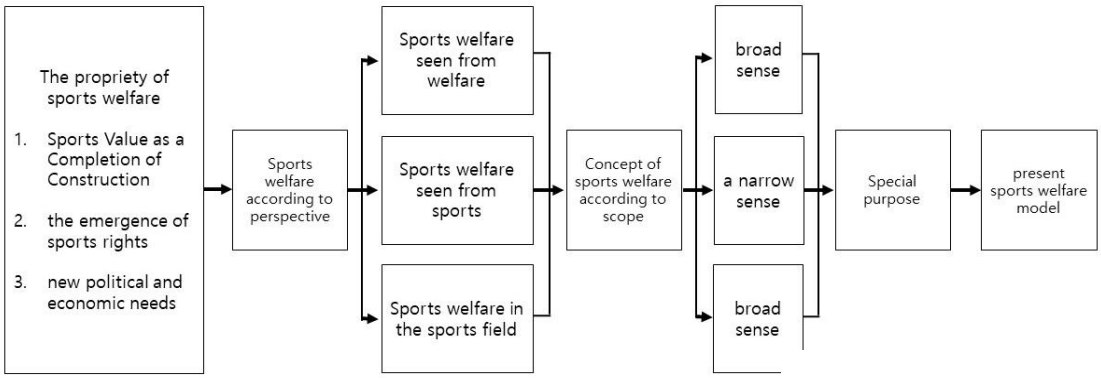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Korea

## 3. 연구결과

### 3.1. 준공공재로서의 스포츠 가치

스포츠는 준공공재로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비용 절감 산업이지만, 고정비용의 비중이 가변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 자체의 적응 유연성, 스포츠의 사회적 책임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스포츠 접근 기회의 불공평성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는 사적 재화와 공공재의 두 측면을 가진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스포츠는 선택가치 (option value)로 현재 소비하지 않아도 추후 소비가 가능하다는 기대효용이 높다. 즉, 스포츠는 정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포츠 활동 제약을 단순히 개인의 스포츠기본권 제약이나 스포츠 향유 (참여)기회 감소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고립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 정책적으로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 소득, 나이, 신체적 장애, 지역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완화하여 스포츠 향유 (참여)에 있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스포츠 접근성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 3.1.1. 스포츠권의 등장

스포츠권은 가치를 높이는 삶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작용하였다. 즉,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가 중시되면서 '힐링' 과 '웰빙' 이란 단어가 이슈화되었다. 특히, 여가활동, 체육참여, 문화예술 등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만족도가 높고 그와 비례하여 참여만족도 역시 높은 여가활동이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실현의 욕구,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정신적 건강추구 욕구, 행복추구 욕구, 사회적 관계형성 욕구를 신체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현해주는 활동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인간 삶의 행복을 위해 최소한의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의 사회적 정책,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개인의 스포츠 향유 (참여)는 노동권, 사회보장권, 생존권과 같이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스포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3.1.2.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등장한 새로운 니즈 스포츠복지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스포츠복지로 치유함으로써, 사회복지로 해결하기 힘든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축된 심리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급부상하였다. 스포츠복지는 세가지 측면에서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예술문화, 여가, 관광,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인권 차원에서의 스포츠향유를 시작하였다. 두 번째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복지는 정치인들의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문화로 인한 사회통합 문제, 과부화 된 사이버문화와 학업문제 인한 청소년의 건강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현대사회의 고령화 시작으로 노인의 건강문제, 학업과 확대된 사이버문화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각각의 결여사항을 스포츠를 통해 해결하려는 스포츠복지를 시도하였다.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SWOT 여건분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WOT Analysis

| Strength (S) - Enhance | Weakness (W) - Supplementation |
|---|---|
| ● Successful sports development<br>● Government included welfare area in sports vision<br>● Increase in national welfare awareness<br>● New understanding of sports value | ● Increased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unemployed.<br>● Increasing the need for family protection,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br>● Lack of sports infrastructure<br>● Enormous investment capital require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providing sports services |
| **Opportunity (O) - Seize** | **Threat (T) - Removal** |
| ● Change in perception of sports<br>● Changes in values for leisure and culture<br>● Political debate on welfare<br>● Increase in the national demand for sports for living<br>● Discuss about sports rights | ● Low birth rate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br>● Increased proportion of welfare budget<br>●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due to diversification of population composition |

### 3.2. 스포츠 패러다임과 참여종목

생활체육의 국민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의 대한체육회가 통합되었고 그 결과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즉,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야 함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의 발전함을 의미한다.

스포츠 참여 종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민총소득은 2011 년 24,302 달러에서 2014 년에 28,180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산업화는 이미 탈산업사회 (3 차산업 서비스집약에서

4 차산업 정보, 의료, 교육, 지식 집약)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3 시간, 5.3 시간으로 2016 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 만 1 천원으로 2016 년에 비해 1 만 5 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증대 (2019 년 기대수명은 남자 80.3 년, 여자 86.3 년으로 각각 전년대비 0.5 년, 0.6 년 증가)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가 나타났다.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1 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이 2014 년 54.8%, 2016 년 59.5%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 년 56.0%와 대비해 3.5%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주 2~3 회 이상 연령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연도별 비교결과에 따르면 은퇴기 이후 세대 특히 60 대와 70 대 이상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체육활동 참여율은 60 대 이상의 경우 2006 년 33.0%에서 2016 년 54.2%로 나타났고, 70 대 이상은 2006 년 24.3%에서 2016 년 49.5%로 증가하였다. 동호인 클럽수의 경우, 2004 년 전체인구 대비 5.1% (클럽 73,802 개, 동호인 2,449,948 명)에서 2016 년 10.8% (클럽 115,303 개, 동호인 5,579,640 명)로 약 2 배 증가하였다.

스포츠 참여 종목의 변화는 국가의 체육시설 및 정책 (골프의 대중화 정책 등), 경제적 여건, 매스미디어의 영향, 유행 (trend), 스포츠 장비의 보급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참여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서민스포츠와 귀족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으로 구분되고 서민스포츠는 신중산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종목의 다변화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적 계층구조에 따른 흐름과 방향만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다소 반영된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경제사회계층과 연도별 구분에 따른 참여종목 변화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classes and Participatory Events by Year

| Economic and social class | Aristocratic sports | Common people sports | | Sports underprivileged |
|---|---|---|---|---|
| | | New middle class group | Existing common people group | |
| 1970s | Tennis | Spectator sports center | | Spectator sports center |
| 1980s | Ski | Group and ball games such as soccer, Basketball, and baseball | | |
| 1990s | Golf | Swimming, etc. | | |
| 2000s | Riding | Health, yoga, etc. | | |
| 2010s | Yacht | Golf, ski | Camping, climbing, biking, etc. | Groups and ball games such as soccer, basketball, and baseball |
| Since the 2020s | Air sports | Golf, riding | Ski, golf | |

귀족스포츠는 일부 부유계층이 즐기는 스포츠이며 테니스, 스키, 골프, 승마, 요트 순으로 변화하였다. 귀족스포츠의 대표적인 특징은 과시욕 극대화를 위한 고비용화, 신체 충돌이 없는 비폭력화, 도심을 벗어난 교외화, 개인의 차례가 있는 순서화,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화 등의 특징이 있다. 귀족스포츠는 참여스포츠인 반면에 서민스포츠는 관람스포츠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서민층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시간 활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1980 년대에는 교내 운동장 시설을 중심으로 활용하여 저비용 대비 고효율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구기 단체종목 중심으로 참여하였다. 1990 년대부터 정부는 스포츠센터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립하였으며,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시설을 중심으로 주로 수영종목에 참여하였다. 이후 2000 년대 초반에는 대중매체에서 '건강미'와 '몸짱 신드롬'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홍보하였고, 주로 요가와 헬스를 중심으로 참여하였다. 2010 년대에는 기존 서민층과 신중산층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기존 서민층 그룹은 아웃도어와 캠핑산업의 성장과 보급, 그리고 정부가 4 대강 정책 시 계획한 '전국 자전거 도로화'의 영향으로 자전거, 등산, 캠핑 종목에 참여하였으며, 신중산층 그룹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의 영향으로 골프참여가 이루어졌다. 스포츠 소외계층은 주로 관람스포츠를 중심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스포츠를 경험하였으며, 학교 교육시설 내 체육 현장에서 제공하는 단체 구기종목인 농구, 축구, 야구를 위주로 스포츠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미래 참여예상 종목은 기존 서민층 그룹은 신중산층 그룹을 따갈 것이고, 신중산층 그룹은 귀족스포츠를 따라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족스포츠는 특수 기구 및 장비로 공중 유영을 즐기는 항공스포츠로 넘어갈 것이다.

### 3.3. 관점에 따른 스포츠복지 개념

### 3.3.1. 복지에서 바라본 스포츠복지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복지 측면에서는 복지영역의 하위영역으로 바라본다. 복지영역에서 스포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스포츠복지의 역할을 그저 복지증진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ee & Shim, 2011). 복지사회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문화, 최저생활의 보장 등에 중점을 두었을 때, 복지사회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가치를 정신적, 물직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된다 (Lee,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스포츠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며, 스포츠는 인간의 내재적인 동기를 기본 전제로 하며, 스포츠 활동 자체로서 스스로 자기개발 능력을 실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정식적, 신체적 건강과 더 나아가 사회성을 함양하여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결국 스포츠는 복지사회를 앞당겨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리로 삶의 질 향상 추구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들 스스로 자아실현 욕구와 미래사회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지혜택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사회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중 스포츠는 복지정책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Lee,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는 단순 육체적인 활동을 넘어 삶을 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개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Lee & Shim, 2011).

### 3.3.2. 스포츠에서 바라본 복지

스포츠 측면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스포츠가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복지향상에 필수요소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Lim (2006)의 댄스스포츠 몰입경험과 노인복지향상 및 건강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참여가 복지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는 결코 우리 생활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신체적인 성취감을 넘어서서 이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내재함으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복지는 스포츠와 복지 두 단어가 결합한 용어로 스포츠영역에서는 복지를 지칭한다 (Kim, 2007). 한편, Kim, Kim and Lee (2010)은 스포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스포츠복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에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스포츠 욕구를 지닌 만큼 이를 충족시키는 스포츠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광의의 개념과 스포츠 소외계층에 방점을 두고 참여를 보장을 해야 한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Kim (2007)에 따르면 스포츠복지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내지 행복한 삶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스포츠 사회복지론에서 "스포츠복지란 계층, 성별, 연령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스포츠문화 혜택을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가는 행복 추구를 보장한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스포츠복지를 검토해 왔다. 헌법에는 기본권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헌법은 사회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가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스포츠복지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Kim, 2007).

이상에서 보듯이 복지와 스포츠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복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스포츠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국가는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등)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곧 사회체육의 목표인 복지사회 구현과 그 뜻을 함께하며 스포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는 사회환경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촉진시켰고, 사회환경의 환경개선을 통해 스포츠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복지의 기반형성과정은 사회환경 변화와 스포츠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스포츠 참여자는 사회환경 변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스포츠복지는 긍정적인 사회환경 변화 발전과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사회환경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스포츠는 스포츠복지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3.3. 스포츠 영역에서의 스포츠복지

스포츠 영역은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Ahn, 2012).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기형적 제도로, 엘리트체육은 코치, 심판, 선수 등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제도로,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단절된 영역으로 한국스포츠 시스템을 구축되어왔다. 이에 체육의 근본인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엘리트 체육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스포츠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즉, 한국스포츠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저변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체육과의 연대를 통해 멀티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 참여기회의 확대는 지역의 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지도자 등 전문인력 배치, 수영장 등 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한 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스포츠복지의 구현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3.4. 범위에 따른 스포츠복지 개념

### 3.4.1. 광의의 스포츠복지 개념

광의적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 개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본 전제로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소포츠 복지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스포츠복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개념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접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Kim, Kim & Lee, 2010; Lee, 2007)는 것이다. 생활체육 정책의 방향과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생활체육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많은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스포츠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시에 그 범위와 수급자 선정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3.4.2. 협의의 스포츠복지 개념

협의적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 개념은 선택적인 사회복지 개념을 일부분 적용하여 스포츠 활동이 특히 요구되는 수급자에게만 스포츠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국가가 선별한 사회복지수급대상자 즉, 청소년, 경제적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장애인 등의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선별된 수급 대상자에게만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바우처, 현금, 현물, 교육 및 시설을 제공하는 형식의 복지를 협의의 스포츠복지로 규정지을 수 있다. 광의의 스포츠복지와 다르게 협의의 스포츠복지가 가지는 차별점은 선별된 수혜대상자에게 스포츠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체육정책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정책과는 달리 스포츠복지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장점이 있다.

### 3.4.3. 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 개념

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 개념은 스포츠를 생업으로 하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체계이다. 스포츠를 생업으로 하는 학생선수, 심판 및 코치, 전문 엘리트 체육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마지막으로 장애인/전문/유소년/노인/생활 스포츠 지도사 등 스포츠 생산자 (체육인)만을 위한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는 광의의 스포츠복지, 협의의 스포츠복지와 다르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하기 위한 복지로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현재 일부 학계와 실무에서는 체육인복지 스포츠복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복지 범위 내에서 스포츠생산자만을 위한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 스포츠복지에 포괄되어야 함으로 이를 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 향후에 스포츠복지법이 입법화하게 된다면, 별도의 체계로 개별특별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m, 2011).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사업규정이 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법을 갈음하고 있는 실태이다 (Sohn & Yoon, 2009).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생산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 (국내/국외대회 입상여부, 메달여부 등)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범위와 대상이 한정적이고 각 종목마다 생존권 보장 내용도 다르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3.5. 스포츠복지 영역, 대상, 목적, 개념화

본 연구의 목적인 스포츠복지 대상, 영역 및 목적, 개념화는 본 연구모형에 따른 전개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스포츠복지 영역은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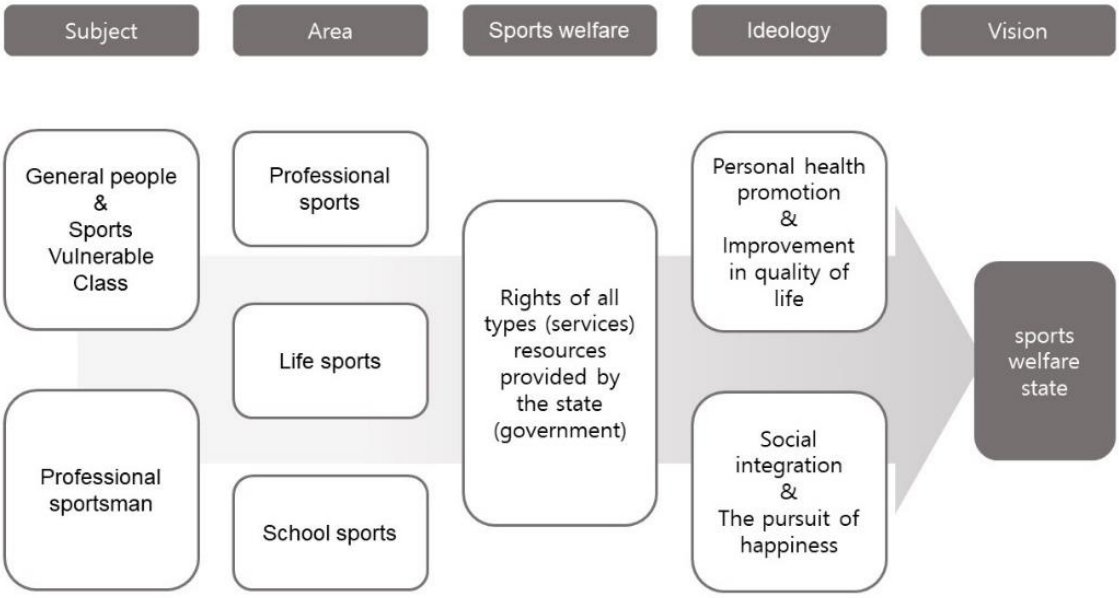


**Figure 2.** The Sports Welfare Sector

#### 3.5.1. 스포츠복지 대상

첫째,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둘째, 스포츠 참여 취약계층, 셋째,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구분하였다.

#### 3.5.2. 스포츠복지의 목적과 개념화

첫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생존권 보장이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대상인 스포츠복지 영역은 생존권보장을 위한 영역으로 평생사회안전망,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스포츠 바우처제도와 은퇴한 선수들을 위한 연금지원 등이 있다.

둘째, 차별 없는 동등한 참여환경 조성이다. 스포츠 참여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스포츠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적용대상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서 스포츠참여 취약계층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스포츠에서 사회적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참여환경에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으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복지영역은 스포츠를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통합적, 치유적인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복지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차별 없는 동등한 스포츠참여 환경조성,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차원의 스포츠 지원 총제"로 정의할 수 있다.

#### 3.5.3. 스포츠복지 모형

스포츠복지 모형은 구체적으로 세로행은 대상별 분류이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스포츠참여 취약계층, 일반국민으로 구분하였다. 가로행은 목적별 분류로 생존권 보장형 사회복지서비스 (상해보험, 사회보험, 스포츠공제회, 평생사회안정망 생애주기별 지원, 공공부조 바우처, 사회서비스 대상별 프로그램), 차별 없는 동등한 참여환경 조성 (재정 보조금 지원, 조직 스포츠클럽 동호회 지원, 홍보 캠페인, 지도자 파견사업, 시설 건립,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은 개인적 측면에서 총체적(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사회통합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스포츠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포츠권의 향상과 보장에 있다. '광의의 스포츠복지'는 스포츠참여 취약계층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동등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협의의 스포츠복지'는 스포츠참여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과 생존권 보장 그리고 차별 없는 동등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조성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체육인 복지'의 경우 전문 체육인들을 조직적으로 정의하고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주로 체육인들은 엘리트 (전문)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각 개인의 실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책정과 보수, 입상성적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복지정책이 지원된다. 결국, 체육인 복지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협의의 스포츠개념에 속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 개념이 여러 사회 및 경제정책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미디어와 매체에서 일상화되어지는 시점에서 스포츠 복지의 개념, 범위 및 대상을 재정비하며, 스포츠복지의 모본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다양한 관점과 범위에 따른 스포츠 복지를 분석하고 스포츠복지의 대상과 목적의 개념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위 논문, 학회지 논문, 학술지 등 관련 선행연구와 각 지자체 및 기관의 정책분석을 위한 홈페이지 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스포츠정책개발원 (KISS)의 정책보고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안들을 기반으로 스포츠복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 스포츠복지는 보편적복지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점차 강화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선택적 복지 또한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여 스포츠복지의 선별적, 보편적 복지 구분을 벗어나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 또는 선별적 복지(selective)-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로의 전환이 훗날 스포츠 정책의 개발, 실행 및 평가의 핵심으로 여겨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연구 및 스포츠복지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전 국민에게 스포츠복지와 인권을 보장하며 발전의 궁극적 가치 및 목적을 위해 생존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차별 없고 평등한 스포츠 참여의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공차원의 일반국민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총체적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복지의 대상은 일반국민, 스포츠 참여에 있어 취약계층,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스포츠 복지의 범위로는 목적 별 생존권 보장, 차별 없고 평등한 스포츠 참여환경,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스포츠 복지에 대해 새롭게 제시된 통합적 관점을 적용하여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 실행 및 평가의 핵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제시된 통합적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스포츠 통합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및 통합 모형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정책의 개발방향과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발전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적극적 복지를 위해 체육 지도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며, 지도자의 환경이 스포츠 관련 예산과 시설 성장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단발성으로 진행 또는 수요자의 요구 및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던 기존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인지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운영예산, 인적, 물적 등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적극적 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

처방 및 체력측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참여자 및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생활체육으로 연계되어지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스포츠 복지의 성공 여부는 적극적인 수혜자의 니즈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현대사회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대면·비대면으로 혼돈하는 미래의 스포츠 복지를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잠재력과 역량 계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복지의 정책을 수립 및 시도하며 실행에 힘써야 한다.

## References

Ahn, M. S. (2012). Eight years of live-in practice, dreaming of becoming a truly advanced country in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98*, 6-9.

Choi, M. S.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sports welfare. *Sports and Law*,

*19*(4), 133-158.
Hong, E. A., Eugen, E.., & Kim, S. B. (2013). Exploring school sports policy plans through establishing the concept of school sports welfare. *Korean Sports Association, 52*(4), 425-435.
Jang, J. O. (2007). Legal and policy tasks for realizing a sports welfare state. *Sports and Law, 10*(1), 95-122.
Jo, N. Y., Yu, J., & Kim, S. B. (2012). Analysis of the concept of "welfare" for student sports welfare: focusing on social welfare, educational welfare, and sports welfare. *Sports Science Research, 23*(3), 621-638.
Kim, K.I., Kim, M. R., & Lee, J. H. (2010).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sports welfare models for the underprivileg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 40*, 197-2.
Kim, S. G. (2007).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task of sports welfare. *Sports and Law, 10*(1). 125-147.
Kim, S. G. (2011). The system of sports rights and Korean sports law. *Land Construction Law Research, 54*, 439-460.
Lee, E. S., & Shim, G. S. (2011). Meta-analysis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in Korea. *Korean Society for Exercise Rehabilitation, 7*(1), 29-39.
Lee, J. H. (2007). Leisure sports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17*(3), 38-45.
Lee, J. W. (1995). A Study on physical welfare in local autonomy system. *Journal of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8*, 127-139.
Lee, Y. J., & Hwang, H. H. (2016). Establishment of sports leisure welfare concept and derivation of service factors. *Journal of Korean Leisure Recreation Society, 40*(4), 65-80.
Lim, C. W., & Kim, D. H. (2015). Legal definition of sports welfare and consistency of legal system-comparison with cultural welfare. *Sports and Law, 18*(4), 205-235.
Lim, K. H. (2006). The effect of dance sports immersion experience on elderly welfare improvement and health care type. *Journal of the Korean Sports Association, 4*(1), 243-251.
Oh, T. G. (2005).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basic sports rights based on constitutional amendment. *Korean Sports Research, 16*(4), 1085-1093.
Shim, G. S. (2012).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Focusing on the change of social function of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Sports Policy, 2*, 55-74.
Shim, G. S., & Kim, J. Y. (2012). A plan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youth instructors by applying the Korean youth welfare paradigm and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Exercise Rehabilitation, 8*(3), 93-106.
Sohn, S. J. (2016). Changes in Korea's lifestyle and sports policy and future prospects. *Sports Entertainment and Law, 19*(4), 69-89.
Sohn, S. J., & Yoon, T. H. (2009). A plan to improve sports welfare related legislation. *Sports and Law, 20*, 35-54.